제11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
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(2022.4.14.)

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

창 원 시 의 회
(건설해양농림위원회)

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. 4. 14.
건설해양농림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4. 8.
심영석·공창섭·김경수·김경희·김상찬·김상현
김종대·박현재·이우완·정순욱·주철우 의원
(11명)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4. 8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1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
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(2022.04.14.) 상정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 설명자 : 심영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주부민방위기동대의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 지킴이로서의 기동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제3항)

○ 임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의2)

○ 기동대 정원에 관한 사항 변경(안 제10조)

○ 편성제외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1조제1의2호 및 제1의3호)

○ 기동대 동원, 지휘·감독 및 복제에 관한 사항 신설
(안 제11조의2, 안 제14조의2, 안 제15조의2)

○ 연합회 구성, 임원, 임기,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변경
(안 제16조, 안 제18조~제20조)

다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의안번호 1041, P11~12

나. 현행 조례 : 의안번호 1041, P13~16

다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(2022.04.08.~04.13.) 결과 : 제출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의안번호 1041, P31~32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정회교)

□ 개정의 필요성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호칭 등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현행 조례에 미규정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□ 주요내용

○ **안 제8조제3항**은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**안 제8조의2**는 임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

○ **안 제10조**는 기동대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“40명 내외”를 “30명 이내”로 변경함.

○ **안 제11조제1의2호 및 제1의3호**는 편성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.

○ **안 제11조의2, 안 14조의2, 안 15조의2**는 기동대 동원, 지휘·감독 및 복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

○ **안 제16조, 안 18조 ~ 안 20조**는 연합회 구성, 임원, 임기,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.

□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호칭 등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현행 조례에 미규정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서의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음.

○ 주요 내용으로는, 시 연합회 “대장 및 부대장” 호칭을 “회장 및 부회장”으로 변경함에 따라 호칭 등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, 연합회 및 기동대의 임원의 임기·임무, 정원, 편성제외 규정을 정비하며 기동대의 동원, 지휘·감독, 대원의 복제[1]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미규정된

---

1) ‘**복제**’ 관련 법규(규정)
- 민방위기본법 시행령
  제36조(복제 등) 민방위 대원은 교육훈련 중이나 임무 수행 중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민방위 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(標識章)을 달 수 있다.
-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
  제45조(복제) 영 제36조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 모자, 민방위복, 민방위 완장 및 민방위 표지장으로 한다.
-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
  제2조(민방위복제의 착용) ②「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」제45조의 민방위복과 제4조의 민방위활동복(이하‘활동복’이라 한다)은 복제의 착용 여건이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복장으로 통일하여 착용한다.

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요지 : 기재생략

5. 토론(대체토론)요지(주요문제점) : 없음

6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(부대의견, 건의사항, 촉구사항 등) : 없음

제4조(활동복 제정) ① 재난현장 등에서의 민방위 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활동복을 제정하여 활용한다.
② 활동복은 조끼형태로 제작하되 그 형상·제식 및 재질은 별표와 같다.